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3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다. 고령운전자 교육(안 제5조)

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안 제6조)

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제22조
- 「교통안전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반영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